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민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 연구위원
mshan@kiep.go.kr

윤상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거시팀장
syoon@kiep.go.kr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선임연구원
acroc101@kiep.go.kr

장영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前)

김수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前)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최근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시장경쟁의 약화가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음.
 - 노동시장의 불평등 확대는 상품시장에서 소수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는 현상과 관련 있으므로, 불평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현상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 최근 기술진보, 세계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 구조적 변화로 인해서 산업집중도가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주요국의 정책당국은 소비자 후생을 넘어서 ‘균형 있는 경제발전’과 ‘포용적 혁신성장’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가지고 경쟁법 집행 강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
- ▶ 이러한 배경하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살펴보고,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우리 경쟁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
 - 우리나라의 경쟁법은 이미 제정 당시부터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와 함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정하면서 법의 목적을 폭넓게 규정
 - 미국과 EU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확대와 함께 시장경쟁 왜곡에 대응하는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경쟁정책의 역할이 강조되는 추세
 - 특히 우리나라 경쟁정책 중 대·중소기업 정책이 산업집중도 완화와 포용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발견
-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연구는 ① 향후 경쟁정책을 산업 및 거시경제적 효과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②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경쟁정책 역량을 강화하며 ③ 신속한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9년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은 지나치게 심화되었다고 평가하면서 ‘포용적 혁신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음.
 - 전 세계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상위 1%의 소득비중 및 불평등지수는 증가하는 반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국제기구와 학계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가 복지와 공정의 문제를 넘어서 저성장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불평등의 완화가 중요하며 적절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
- 최근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시장경쟁의 약화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과 함께 이러한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주장도 조금씩 힘을 얻고 있음.
 - 불평등이 노동시장만의 현상이 아니며, 마치 동전의 다른 면처럼 상품시장에서 소수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는 현상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
- 이러한 배경하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경쟁정책의 역할을 살펴보고,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집중도 완화를 위한 정책당국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필요
 - 소수기업에 대한 집중도 심화는 구조적 변화에 의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경쟁정책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제기
 - 이에 본 연구는 경쟁법 및 경쟁정책 역사의 두 축인 미국과 EU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과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집중도 심화와 경쟁정책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주요국의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분배의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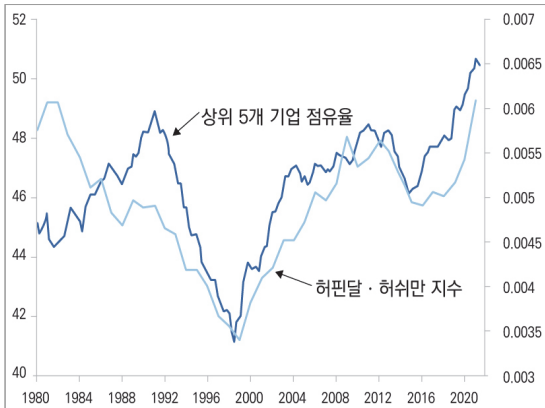
- ① 시장집중도와 마크업의 상승세는 미국과 EU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측정방법별, 국별·산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산업집중도는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미국 백악관 설명자료(Fact Sheet)에 따르면 전 산업의 75% 이상에서 소수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된 현상이 나타났으며, 유럽의 경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집중되어 보이나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집중도는 증가하는 모습

그림 1. 미국 시장집중도 추이

(단위: (좌) %, (우)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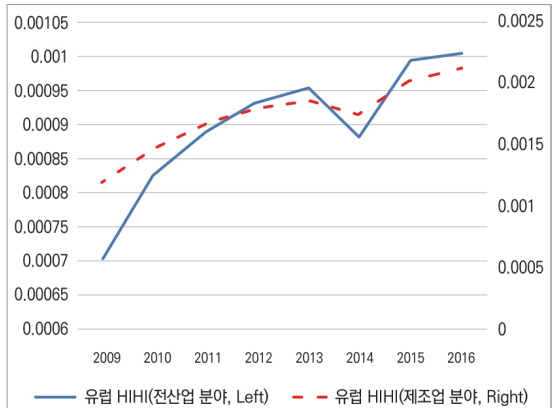


주: 상위 5개 기업 점유율은 각 산업의 상위 5개 기업 수익 비중을 가중평균한 값(average revenue share of the five largest firms in each industry, weighted by industry revenue).

자료: Goldman Sachs(2021).

그림 2. EU 허핀달·허쉬만 지수 추이

(단위: Index)



자료: Bighelli *et al.*(2021), p. 15.

- 최근 들어 산업집중도가 더욱 심화된 원인은 기술진보, 세계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이며,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주요국 정책당국은 경쟁법 집행 강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쟁법의 목적도 소비자 후생을 넘어서 더욱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 공정거래위원회 리나 칸 위원장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 반독점 조사 및 경쟁법 집행을 활발하게 추진
 - 따라서 경쟁정책의 초점이 소비자후생을 넘어서 생산자, 노동자 등의 이익에도 부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
 - 유럽에서도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
- ②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킴.
- 국가·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산업집중도의 심화(마크업의 상승)는 포용적 혁신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
- 마크업이 증가할수록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음.
- 반면 마크업과 총요소생산성 및 노동생산성 사이에는 매우 약한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만 나타났음.

2) 주요국과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역사와 최근 집행 상황의 변화

- ①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은 1980년 12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공포되면서 시작되었음.
 - 미국의 경쟁정책은 1880년대에 ‘트러스트’라는 기업형태로 독과점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석유, 철도, 철강 등에서의 경쟁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셔먼법(Sherman Act)」의 탄생으로 시작되었으며, 1914년 「클레이튼법(Clayton Act)」과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제정, 1934년 「로빈슨-패트만법(Robinson-Patman Act)」 등을 거치면서 전체적인 모습이 완성되었음.
 - 유럽의 경우 ECSC 조약(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Treaty, 파리조약)을 「EU경쟁법」의 기원으로 볼 수 있으나, 보다 현대적인 경쟁법은 1957년 유럽공동체 회원국 간 단일시장 및 공동시장 달성을 위해서 지배적 기업에 의한 시장 장악과 통제를 방지하기 위한 EC 조약(European Community Treaty)에서 시작되었음.
 -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유럽최고법원의 해석과 판결을 통하여 경쟁법의 입법목적은 오래 시간에 걸쳐서 정립한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쟁법은 법률 제정 당시부터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방지’라는 입법 목적을 법률 자체에서 명확히 하고 있음.
- ②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은 이미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정하는 등 그 목적을 폭넓게 규정했으며, 디지털 경제의 확대와 함께 시장경쟁 왜곡에 대응하는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는 추세인 미국, EU와 마찬가지로 경쟁정책의 역할도 강조되는 추세
 - 미국의 경쟁정책은 2010년 들어서 주요 빅테크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지배력을 판단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활발한 반독점 조사와 경쟁법 집행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되었음.
 - 유럽의 경우도 EU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에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

며,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강화 법안을 제시하기도 했음.

- ③ 한국의 경쟁정책을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 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할 때, 경쟁정책 도입 이후 40년 동안 법의 제정 및 집행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음.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 집행 실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서의 제재는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추세의 주요 원인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사건 자체의 복잡성으로 경제적 효과 입증에 어려워졌기 때문임.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과 소비자정책 분야에서의 사건처리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제재수준은 유지되거나 크게 하락하지 않았음.
 - 이것은 우리 경쟁정책 당국이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법 집행이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강도 역시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조치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집행강도에 있어서도 범위 반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통한 경고 조치보다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통해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

3)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의 변화와 포용적 혁신성장

- 우리나라의 '포용적 혁신성장 지수'로서 △ 산업집중도 지수 △ 요소소득 분배 지수 △ 미래 성장동력 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제안하고 경쟁법 집행의 변화가 이 세 가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 첫 번째 포용적 혁신성장 지수인 산업집중도 지수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중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 법 집행 강화만이 일관되게 산업집중도를 완화하며,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큰 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정책은 가맹·유통·하도급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만 유형을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정결과는 이러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 법 집행 강화가 집중도를 완화한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함.

- 두 번째 포용적 혁신성장 지수인 요소소득 분배 지수와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 법 집행 강화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교해서 큰 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산업집중도 완화가 생산요소를 공급하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정책이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10% 유의수준에서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서 규모가 큰 기업에서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 번째 포용적 혁신성장 지수인 미래 성장동력 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으며, 큰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어떠한 경쟁정책 분야의 법 집행 강화에 대해서도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교해서 큰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 집행 강화는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교해서 큰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 집행 강화는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1. 경쟁정책과 산업집중도 지수(HHI)

	(1)	(2)	(3)	(4)	(5)
전통정책	-0.000 (0.000)				-0.000 (0.000)
소비자		-0.006 (0.004)			-0.003 (0.004)
대중소기업			-0.008*** (0.002)		-0.008*** (0.003)
경제력 집중				0.013 (0.017)	0.020 (0.014)
관측치 수	384	384	384	384	384
R2	0.923	0.923	0.924	0.923	0.925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생산성, 노동자수, 노동자 1인당 자본,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매출원가 대비 수입비중, 산업 고정효과, 연도 고정효과 및 상수항은 포함했으나 보고하지 않음.

3)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전통정책), 소비자정책(소비자),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대중소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경제력 집중)을 회귀식의 독립변수로 사용.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공정위 경쟁정책 조치현황을 이용하여 추정(2021. 9. 11).

표 2. 경쟁정책과 분배 지수

패널 A. 경쟁정책 집행 분야가 기업규모별 총요소소득에 미치는 영향

	(1)	(2)	(3)	(4)	(5)	(6)	(7)
전통정책	0.001** (0.000)				0.000 (0.001)	-0.001 (0.001)	0.001* (0.000)
전통정책 × 총자본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소비자		-0.001 (0.004)			-0.026** (0.010)	-0.017** (0.008)	-0.008** (0.004)
소비자 × 총자본		0.000 (0.000)			0.003** (0.001)	0.001** (0.001)	0.001* (0.000)
대중소기업			0.009*** (0.002)		0.023*** (0.006)	0.012*** (0.004)	0.011*** (0.002)
대중소기업 × 총자본			-0.001*** (0.000)		-0.002*** (0.001)	-0.001*** (0.000)	-0.001*** (0.000)
경제력 집중				0.007 (0.011)	0.004 (0.024)	0.003 (0.019)	-0.004 (0.011)
경제력 집중 × 총자본				-0.001 (0.001)	-0.001 (0.003)	-0.000 (0.002)	0.000 (0.001)
총자본	0.219*** (0.010)	0.217*** (0.010)	0.226*** (0.010)	0.218*** (0.010)	0.177*** (0.017)	0.305*** (0.016)	0.227*** (0.010)
관측치수	22,722	22,722	22,722	22,722	8,053	14,138	22,722
R-squared	0.966	0.966	0.966	0.966	0.911	0.959	0.966
기타통제변수	0	0	0	0	0	0	0
기업 FE	0	0	0	0	0	0	0
산업 FE	0	0	0	0	0	0	0
연도 FE	0	0	0	0	0	0	0

패널 B. 경쟁정책 집행 분야가 기업규모별 노동소득에 미치는 영향

	(1)	(2)	(3)	(4)	(5)	(6)	(7)
전통정책	0.001*** (0.000)				0.000 (0.001)	0.000 (0.000)	0.001*** (0.000)
전통정책 × 총자본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소비자		0.003 (0.002)			-0.002 (0.007)	-0.004 (0.004)	-0.002 (0.002)
소비자 × 총자본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대중소기업			0.007*** (0.001)		0.010*** (0.004)	0.012*** (0.002)	0.007*** (0.001)
대중소기업 × 총자본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경제력 집중				0.006 (0.006)	-0.007 (0.017)	0.002 (0.010)	-0.004 (0.007)
경제력 집중 × 총자본				-0.001 (0.001)	0.001 (0.002)	-0.000 (0.001)	0.000 (0.001)
총자본	0.102*** (0.006)	0.101*** (0.006)	0.107*** (0.006)	0.101*** (0.006)	0.088*** (0.010)	0.129*** (0.009)	0.108*** (0.006)
관측치수	22,722	22,722	22,722	22,722	8,053	14,138	22,722
R-squared	0.981	0.981	0.981	0.981	0.941	0.980	0.981
기타통제변수	0	0	0	0	0	0	0
기업 FE	0	0	0	0	0	0	0
산업 FE	0	0	0	0	0	0	0
연도 FE	0	0	0	0	0	0	0

표 2. 계속

패널 C. 경쟁정책 집행 분야가 기업규모별 자본소득에 미치는 영향

	(1)	(2)	(3)	(4)	(5)	(6)	(7)
전통정책	-0.000 (0.001)				-0.001 (0.003)	-0.003** (0.002)	-0.000 (0.001)
전통정책 ×총자본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소비자		-0.018* (0.010)			-0.122*** (0.035)	-0.046*** (0.017)	-0.028*** (0.011)
소비자 ×총자본		0.002* (0.001)			0.013*** (0.004)	0.004*** (0.001)	0.003*** (0.001)
대중소기업			0.010* (0.006)		0.056*** (0.020)	0.008 (0.010)	0.015** (0.006)
대중소기업 ×총자본			-0.001* (0.001)		-0.006*** (0.002)	-0.001 (0.001)	-0.001** (0.001)
경제력 집중				-0.000 (0.031)	0.006 (0.097)	0.041 (0.048)	-0.004 (0.031)
경제력 집중 ×총자본				0.000 (0.003)	-0.002 (0.010)	-0.003 (0.004)	0.001 (0.003)
총자본	0.429*** (0.025)	0.426*** (0.025)	0.439*** (0.025)	0.429*** (0.025)	0.395*** (0.048)	0.544*** (0.036)	0.438*** (0.025)
관측치수	22,721	22,721	22,721	22,721	8,052	14,138	22,721
R-squared	0.842	0.843	0.843	0.842	0.679	0.825	0.843
기타통제변수	0	0	0	0	0	0	0
기업 FE	0	0	0	0	0	0	0
산업 FE	0	0	0	0	0	0	0
연도 FE	0	0	0	0	0	0	0

주: 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2) 상수항과 다른 통제변수인 생산성, 노동자수, 노동자 1인당 자본,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매출원가 대비 수입비중은 모든 회귀식에 포함되었으나 보고하지 않음.

3)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전통정책), 소비자정책(소비자),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대중소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경제력 집중)을 회귀식의 독립변수로 사용.

자료: 통계청 기업활동조사, 공정위 경쟁정책 조치현황을 이용하여 추정(2021. 9. 11).

3. 정책 제언

1)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 재정립

-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경제적 효율성’, ‘소비자후생’ 등에 집중하였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 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최근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산업의 융복합화(Big Blur)로 인해서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이종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이들 산업에 속한 사업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쟁정책의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비판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실제 경쟁정책에

도 반영되고 있는 상황

- 이를 위해서 경쟁당국을 컨트롤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

2)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규제 개선

- 구조적인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경쟁원리를 확산할 필요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경쟁제한적 사전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매년 20여개 안팎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관련 부처의 협조가 좀 더 요구되는 상황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경쟁촉진 행정명령의 가장 많은 부분도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하여 관련 부처별로 책임을 부여하면서, 포용성과 혁신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철저히 제재하여 시정하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 방식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최근 미국정부는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하여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강화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개별 부처들도 경쟁당국과 협의하여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 기업행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산업별 독과점 문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시장의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정책추진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
- 우리나라도 국민 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미국의 경우와 같이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추진할 필요

3)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한 경쟁정책 패러다임 전환

-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가 필요
-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

- 기업결합 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함.
- 경쟁당국의 인적·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
-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
-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KISP**